

# 罰金刑制度에 관한 小考

金 秀 吉\*

目 次	
I. 序 論	4. 罰金刑의 基準과 額數의 問題點
II. 罰金刑의 一般的 考察	5. 勞役場留置와 問題點
1. 罰金刑의 意義	IV. 現行 罰金刑制度의 改善方案
2. 罰金刑의 刑事政策的 意義	1. 罰金刑 適用範圍의 擴大
III. 現行 罰金刑의 運用實態와 問題點	2. 罰金刑의 分納·延納制의 活用
1. 罰金刑에 관한 刑法規定	3. 罰金刑의 執行猶豫制度의 導入
2. 罰金刑의 宣告現況	4. 勞役場留置制度의 改善
3. 總額罰金刑制度와 問題點	5. 日數罰金刑制度의 導入
	V. 結 論

## I. 序 論

인간의 사회생활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 또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병리현상인 범죄는 오늘날 사회구조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質·量面에서 급격히 변모해 가고 있다. 여기에 범죄행위에 대한 刑事制裁로서 刑罰의 내용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고대와 중세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生命刑과 身體刑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人間的 尊嚴性”을 일깨워 주면서 점차 사형과 신체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나아가서 제도자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그 잔혹성을 제거하기 시작하여 차츰 自由刑 중심의 형벌체제로 바뀌어 지금은 모든 국가의 형벌이 자유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濟州大學校 法政大學 法學科 教授

그러나 범죄인의 신체를 일정기간 施設內에 구금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아울러 敎化改善을 도모하는 矯正敎化를 취함으로써 범죄하지 않은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保安과 改善의 바탕을 이루는 자유형은 그 집행과정에서 많은 결합과 모순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자유형 중심의 형벌로는 범죄의 변화, 다시말하면 현대사회의 시민생활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범죄유형의 다양화와 함께 불어나기 시작하는 過失犯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형 특히 단기자유형은 단기간의 수용을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형벌로서 효과보다는 이의 집행에 수반되는 有害效果가 더 크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자유형에 대신하는 형벌이 요망되어 결국은 벌금형의 적용이 확장되는데 이르게 되었다. 자유형에 대한 보완책으로 출발한 벌금형은 오늘날 자유형에 이은 소위 제2의 主刑으로서 형사정책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고 실제에 있어서도 각국의 형벌체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는 형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5년도 제1심 공판사건의 종국처리인원 중 벌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4.5%에 이르고 있으며 略式命命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원을 포함하면 기소된 인원의 84.7%가 재산형을 선고 받고 있다.<sup>1)</sup> 독일에서도 1980년이래 전체사건의 82%이상이 벌금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이 벌금형이 우리 刑事制裁體系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벌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법상의 벌금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罰金刑의 一般的 考察

### 1. 罰金刑의 意義

罰金刑은 범죄인에게 일정금액의 지불을 명하고 그 한도내에서 범죄인의 재산적 이익을

1) 法務研修院, 「犯罪目書」, 1996, pp. 154 - 158.

2) Hans Heinrich Jeschek, Lehrbuch des Strafrechts, Allgemeiner Teil 4. Aufl, 1988. S. 700.

박탈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刑罰이다. 따라서 벌금형은 범죄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빼앗음으로써 그에게 금전적 고통을 주는 것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처리하고 장차 법질서에 적합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sup>3)</sup>

벌금형은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의 12銅法의 賠償(Poena), 고대 게르만법의 贖罪金(Busse), 우리나라 古代法의 贖銅과 같이 公刑罰이 아니라 私人間의 賠償制度로의 성격을 띤 것으로 국가는 피해배상금을 받아 주거나 그 지급을 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점차 국가가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강제함과 동시에 배상금의 일부를 裁判代金 혹은 평화교환의 대가로 왕이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12세기경부터는 피해자의 몫보다 왕의 몫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왕의 그 全額을 차지하기에 이르러 賠償制度는 被害賠償이 아닌 公刑罰로서 그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였다.<sup>4)</sup>

벌금형은 그 후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독자적인 형벌로서 도입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19세기 이후 기존의 형벌의 중심이었던 生命刑과 身體刑을 대신하여 自由刑이 중심적인 형벌로 되면서 자유형 즉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그 代用制度로서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었고 이에 벌금형은 主刑의 하나로 널리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중국의 唐律이 의용되면서 도입된 “贖銅”에서부터 私的賠償의 성격을 벗어나 公刑罰인 벌금형으로 변형되기 시작하였다.<sup>5)</sup> 그 후 이조시대에는 刑法(大明律)上 罰金은 5개 主刑의 換刑方法(贖錢制)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主刑으로 과하지는 않았다.<sup>6)</sup> 벌금형이 主刑으로 시행된 것은 한일합방 후에 일본형법이 적용되면서 부터이다.

## 2. 罰金刑의 刑事政策的 意義

벌금형은 자유형에 이은 이른바 제2의 主刑으로서 형벌의 특성인 一身專屬性을 갖는다.

3) 石川才顯·關澈, 「刑事政策」, 評論社, 1983, p. 234.

4) 金日秀, 「刑法學原論」, 博英社, 1992, p. 1164; 오영근·진희권, “벌금형의 과태료 전환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p. 17; 鄭榮錫·申洋均, 「刑事政策」, 法文社, 1996, p. 390.

5) 李炯國, 「刑法總論研究 II」, 法文社, 1986, p. 759.

6) 愼鎮揆, 「犯罪學 兼 刑事政策」, 法文社, 1989, p. 593.

따라서 犯人 아닌 제3자에 의한 代納이나 국가에 대한 債權과 相計할 수 없으며 벌금납입에 대한 법인 이외의 자의 共同連帶責任도 있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벌금의 상속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沒收 또는 租稅, 專賣 기타 公課에 관한 法令에 의하여 재판한 罰金 또는 追徵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가 있다(刑事訴訟法 제478조). 또한 法人에 대하여 벌금 등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후 合併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合併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9조).

이러한 벌금형의 형사정책적 의의는

첫째, 罰金刑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시설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의 중단, 이에 의한 실직과 가정파탄의 위험성이 적게 된다. 그리하여 주위로부터 “受刑者”로서 낙인 찍혀 기피인물로 평가받지 않으며 범죄인 자신도 필요이상으로 受刑意識을 가져 자포자기에 빠지는 일도 거의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短期自由刑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구금시설내에서 동료수형자들의 진보된 범죄성에 감염될 염려도 없는 것이다.

둘째, 罰金刑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형벌이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賭博罪, 贓物罪, 租稅犯罪와 經濟犯罪 등 射倖的 내지는 利欲犯罪인 경우에는 재산의 損失 또는 減損을 내용으로 하는 벌금형은 자유형 못지 않게 고통과 威嚇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또한 法人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그 성질상 자유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벌금형은 효과적인 형벌이 된다.

셋째, 罰金刑은 오늘날 격증하는 過失犯에 대한 효과적인 형벌수단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면서 각종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실현된 범죄, 즉 과실범이 격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미한 과실범은 범죄의 故意가 없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자유형은 特別豫防的 효과를 고려할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과실범은 자유형으로 처벌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의의무를

7) William L. Hickey · Sol Rubin, "Suspended Sentences and Fines", Crime and Delinquency, vol. 3. No. 3. 1971, p. 418.

환기시켜 주고 금전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주의의무를 높일 수 있는 벌금형이 효과적인 制裁手段이 될 수 있다.<sup>8)</sup>

넷째, 罰金刑은 誤判의 경우 그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유형의 경우에도 형의 집행에 의하여 지나간 시간은 회복될 수 없다. 단지 이에 대한 사후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고통이 완화될 수 있을 뿐이며 한번 집행된 형벌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벌금형은 오판의 경우 재산적 이익은 언제든지 회복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행으로 인한 손실은 납부된 벌금액의 총액에 적절한 이자와 보상이 따르면 되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형벌이라 할 것이다.<sup>9)</sup>

다섯째, 罰金刑은 刑執行費用이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특히 略式節次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송경제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sup>10)</sup> 略式節次는 公判節次와는 달리 구두변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재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법정에서 직접 나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예의 보호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피고인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여섯째, 罰金刑은 직접 국고수입을 증대시키게 된다.<sup>11)</sup>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벌금형의 액수를 보면 1991년에 약 2,903억원, 1996년에는 7,279억원으로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다.<sup>12)</sup> 이들 수입을 범죄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금시설에의 수용인원을 감소시키고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자유형 집행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sup>13)</sup>

이와같이 벌금형은 형사정책상 가장 중요한 형벌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罰金刑은 원칙적으로 범행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므로 범죄인의 경제상

8) 이병기·신의기, "벌금형의 운용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p. 24.  
 9) 姜東汜, "財産刑의 問題와 改善方向", 「刑事政策」, 韓國刑事政策學會, 1990, p. 82; 이병기·신의기, 전제논문, p. 27.  
 10) 慎鎭揆, 前掲書, p. 593; 鄭榮錫·申洋均, 前掲書, p. 392.  
 11) George F. Cole·Barry Mahoney·Marlene Thorton·Roger A. Hanson, The Practices and Attitudes of Trial Court Judges Regarding Fines as a Criminal Sanc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uly, 1987, p. 2.  
 12) 法院行政處, 司法年鑑, 1992 - 1997.  
 13) 姜東汜, 前掲論文, p. 82.

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不平等司法의 우려가 있게 된다.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형식적으로는 공정하게 보이지만 가난한 자는 쉽게 지불할 수 없으나 부자는 쉽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sup>14)</sup> 특히 資力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은 一般豫防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sup>15)</sup> 형벌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一般豫防의 기능을 하며 이러한 일반예방효과는 처벌의 重大성과 확실에 기인한다. 처벌의 重大性면에서 볼 때 벌금형의 일반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부자에게는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무조건적인 富의 추구로 나타나 사회기강의 확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sup>16)</sup> 그리고 직업적 범죄자에게는 벌금이 일종의 세금으로 여겨져 형벌경시의 폐풍을 조장할 염려도 없지 않다.

둘째, 가난한 피고인에게 벌금액이 과중한 경우에는 그의 사회적 기반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罰金不納의 경우 결국 勞役場留置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는 또다시 단기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sup>17)</sup>

셋째, 罰金刑은 그 집행이 범죄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되며, 벌금형의 一身專屬性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 벌금 등을 친족이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은 형벌로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 벌금을 내기 위하여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의 징수가 어렵고 사법행정에 추가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sup>18)</sup>

넷째, 罰金刑은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시설에 구금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사회성이 있는 자의 격리를 통한 사회보호적 기능이 떨어진다. 자유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이

14) George F. Cole · Barry Mahoney · Marlene Thorton · Roger A. Hanson, op. cit., p. 3.

15) Hans Heinrich Jeschek, a. a. O., S. 700.

16) 신의기 · 이병기, 전제논문, p. 34.

17) 小暮得雄 · 吉田敏雄, “現代社會 と 刑法改正(I)”, 「現代刑罰法大系 1」, 日本評論社, 1984, p. 265.

18) George F. Cole · Barry Mahoney · Marlene Thorton · Roger A. Hanson, op. cit., p. 3.

있는 반면, 벌금형은 保護觀察과는 달리 어떠한 제약도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 Ⅲ. 現行 罰金刑의 運用實態와 問題點

#### 1. 罰金刑에 관한 刑法規定

罰金刑은 財産刑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서, 현행법상 벌금의 액은 형법 제45조에는 5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를 總額罰金刑制度라고 한다.

罰金の 납입에 대해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동법 제69조 1항),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勞役場에 留置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1항 단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동조 2항). 벌금의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액 유치기간의 日數에 비례하여 벌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한다(동법 제71조). 벌금에 대하여 宣告猶豫는 허용되지만(동법 제59조 1항), 執行猶豫는 허용되지 않는다(동법 제62조 1항).

이와 같이 현행법은 總額罰金制度와 一時納入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납입을 담보하기 위한 勞役場留置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罰金量刑을 위한 벌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납입방법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벌금형의 양형도 형법 제51조 이하의 刑의 量刑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sup>19)</sup>

우리 형법상 법정형으로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變死體檢視妨害罪(제163조), 失火罪(제170조), 過失溢水罪(제181조), 過失交通妨害罪등의 罪(189조 1항), 賭博罪(제246조 1항), 不法福票取得罪(제248조 3항), 過失致傷罪(제266조 1항) 등 7개 규정이다. 그러나 형법상 상당수의 범죄에 대하여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19) 李榮蘭, “罰金刑制度 小考”, 「刑事法研究」, 韓國刑事法學會, 1997, pp. 219 - 220.

있도록 되어 있다.<sup>20)</sup> 특히 제249조의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법정된 경우에도 자유형에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sup>21)</sup>

형법상 다수의 범죄에 대하여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內亂과 外患의 罪(제87조 내지 제104조),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제122조 내지 제135조), 公文書 등의 偽造·變造罪(제225조), 殺人罪(제250조), 強姦罪(제297조) 등과 같이 侵害法益이 중대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배제되어 생명형과 자유형만을 규정한 범죄도 117개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법익을 보호하는 형벌법규에 벌금형이 배제되어 있는 이유는 국가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가의 重刑意志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생명형 또는 자유형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는 범죄의 태양에 대해서 일률적이고 단순한 형벌만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범죄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sup>22)</sup>

## 2. 罰金刑의 宣告現況

현재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制裁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표 1>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제1심공판사건 중국처리인원을 내용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공판사건 중국처리인원은 10년동안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1986년 대비 38.2%가 증가 하였다. 여기에서 자유형은 39.5%, 벌금형은 38.4%가 증가하고 있다.

처리내용 추이를 보면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처리인원의 72% 내외를 유지하여 1995년에는 72.9%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총 처리인원 중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다가 1993년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공판사건에 있어서 벌금형의 활용비중이 자유형보다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 현행 형법상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國旗·國章의 冒濫罪(제105조), 公務執行妨害罪(제136조), 傷害罪(제257조) 등 약 140여개에 달하고 있다.

21) 현행 형법상 자유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하면서 벌금의 병과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범죄는 23개이다.

22) 李榮蘭, 前掲論文, p. 220.

<표 1> 제1심공판사건 종국처리인원(1996년 - 1995년)

구분 년도	계	사 형	징역 또는 금고				벌 금	무 죄	소년부 송 치	기 타
			무 기	유 기						
				정 기	집 유	부정기				
1986	114,815 (100)	8 (0.0)	88 (0.1)	30,670 (26.7)	47,840 (41.7)	4,475 (3.9)	16,649 (14.5)	458 (0.4)	5,911 (5.2)	8,716 (7.5)
1987	114,684 (100)	18 (0.0)	81 (0.1)	28,907 (25.2)	50,731 (44.2)	4,059 (3.5)	15,574 (13.6)	481 (0.4)	5,993 (5.2)	8,840 (7.8)
1988	115,449 (100)	15 (0.0)	65 (0.1)	28,025 (24.3)	53,586 (46.4)	3,699 (3.2)	15,672 (13.6)	424 (0.4)	6,705 (5.8)	7,308 (6.2)
1989	122,645 (100)	17 (0.0)	70 (0.1)	27,396 (22.3)	58,932 (48.1)	3,777 (3.1)	17,844 (14.6)	428 (0.4)	6,666 (5.4)	7,515 (6.0)
1990	137,621 (100)	36 (0.0)	150 (0.1)	29,894 (21.7)	66,601 (48.4)	3,881 (2.8)	20,828 (15.1)	478 (0.4)	7,132 (5.2)	8621 (6.3)
1991	154,829 (100)	35 (0.0)	121 (0.1)	32,495 (21.0)	76,241 (49.2)	3,870 (2.5)	24,650 (15.9)	634 (0.40)	6,789 (4.4)	9,994 (6.4)
1992	147,065 (100)	26 (0.0)	91 (0.1)	30,897 (21.0)	70,842 (48.2)	3,168 (2.20)	25,296 (17.2)	615 (0.4)	7,292 (5.0)	8,856 (5.9)
1993	162,598 (100)	21 (0.0)	109 (0.1)	35,331 (21.7)	78,056 (48.0)	3,445 (2.1)	25,397 (15.6)	764 (0.5)	10,094 (6.2)	9,381 (5.8)
1994	145,961 (100)	35 (0.0)	76 (0.1)	32,137 (22.0)	70,445 (48.3)	2,599 (1.8)	22,331 (15.3)	822 (0.6)	8,229 (5.6)	9,287 (6.4)
1995	158,724 (100)	19 (0.0)	82 (0.1)	36,223 (22.8)	76,883 (48.4)	2,621 (1.7)	23,035 (14.5)	656 (0.4)	8,935 (5.6)	10,270 (68)

자료 :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86 - 1996.

<표 2>는 제1심공판사건 중 벌금형 선고인원을 略式命命事件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판사건의 벌금형 선고인원의 증가가 미미한 것에 비하여 略式命命에 의한 벌금형 선고인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고 또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이 선고된 略式命命事件은 1986년에는 352,989건으로 공판사건의 16,647건보다 21.2배가 높고, 1995년에는 공판사건 23,035건에 비하여 약식명명사건은 31.8배가 되는 733,50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제1심 벌금형 선고인원(1986 - 1995)

연도 \ 구분	공 판 사 건	약식명령사건	계
1986	16,649	352,989	369,638
1987	15,574	373,180	388,754
1988	15,672	393,813	409,485
1989	17,844	467,613	485,457
1990	20,828	577,040	597,868
1991	24,650	638,446	663,096
1992	25,296	665,144	690,410
1993	25,393	749,364	774,757
1994	22,391	724,184	746,575
1995	23,035	733,506	756,541

자료 :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96.

한편 약식명령사건의 처리현황을 <표 3>에서 보면, 1986년의 경우 352,989명이 접수되어 351,411명이 처리되었고, 1995년의 경우는 720,625명이 접수 714,915명이 처리되었는데 그 중 99.4%에 해당하는 710,471명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0.6%에 해당하는 4,444명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되거나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 이와 같이 略式命令事件이 벌금형의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자유형으로 처벌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약식명령사건 처리현황(1991 - 1995)

연도	구분 접 수	처 리		
		계	벌 금	기타(직권공판회부 등)
1986	352, 989	351, 411 (100)	350, 769 (99. 8)	641 (0. 2)
1987	373, 180	376, 131 (100)	375, 623 (99. 9)	507 (0. 1)
1988	393, 813	384, 268 (100)	384, 348 (99. 8)	788 (0. 2)
1989	467, 613	445, 899 (100)	444, 683 (99. 7)	1, 216 (0. 3)
1990	577, 040	552, 077 (100)	551, 214 (99. 8)	863 (0. 2)
1991	638, 446	625, 534 (100)	623, 878 (99. 7)	1, 656 (0. 3)
1992	665, 114	686, 401 (100)	685, 305 (99. 8)	1, 096 (0. 2)
1993	749, 364	749, 047 (100)	747, 787 (99. 8)	1, 260 (0. 2)
1994	724, 184	722, 411 (100)	720, 352 (99. 7)	2, 059 (0. 3)
1995	720, 625	714, 915 (100)	710, 471 (99. 4)	4, 444 (0. 6)

자료: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86 - 1996.

### 3. 總額罰金刑制度

벌금형의 양형방법은 總額罰金刑制度(Geldsummesystem)와 日數罰金刑制度(Tages-satzsystem)가 있다. 우리 형법은 總額罰金刑制度를 취하면서 이의 남입을 담보하기 위하여 勞役場留置에 관한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외에는 형법 제45조가 “벌금을 5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의 量刑基準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벌금형의 양형에 있어서도 자유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51조 이하의 형의 양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

總額罰金刑制度는 벌금을 일정액의 총액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총액벌금형제도는 그 본질적 결함으로 인하여 반사회적이고 부당한 벌금형을 선고하게 하며 따라서 벌금형제도로써 부적당한 제도

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23)</sup>

總額罰金刑制度는 법원이 法定額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특정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행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정도가 어떻게 평가되었으며 또한 행위자의 경제상태 등 개인사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가 불명확하게 된다. 물론 總額罰金刑制度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의 算定에 있어서 행위자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규정자체가 일반적이고 불특정된 것이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행위자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도록 강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sup>24)</sup>

總額罰金刑制度가 내포하고 있는 결함은 동일한 不法과 責任으로 인하여 동일한 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부자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는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실제로는 자유형보다도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어 정당한 형벌에 요구되는 犧牲同等 (Opfergleichheit)의 原則이 무너지게 된다. 그 결과 가난한 자에 대한 벌금형은 그 경제적 능력에 부적합한 高額으로 결정되어 벌금형 자체가 무의미하고 부당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집행은 사실상 시간낭비에 불과하게 된다. 특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換刑處分인 勞役場留置에 있어서 부자는 이를 면할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벌금형의 형사정책적 이점을 상실시켜 결국은 벌금형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 뜨릴 위험성조차 있어<sup>25)</sup>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 4. 罰金刑의 基準과 額數의 問題點

우리 형법상 상당수의 범죄에 자유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의 輕重이 자유형의 輕重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자유형과 비교하여 보면 각 규정에 따라 격차가 대단히 크다. 예컨대 자유형

23) 金日秀, 前掲書, p. 637; 朴舜用, “現行罰金刑制度의 改善”, 「論說集」, 法務部法務諮問委員會, 1975. 5, p. 49; 裴鍾大, 「刑法總論」, 弘文社, 1996, p. 669; 辛義基, “罰金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가을호, pp. 110 - 111; 李在祥, “罰金刑制度 再考”, 「法曹」 제26권 제1호, 1977. 1, pp. 8 - 10; 李炯國, 前掲書, p. 760; 李榮蘭, 前掲論文, p. 221; 李炯碩, “日數罰金制度의 導入에 관한 小考”, 「軍事法論文集」, 제13집, 空軍本部, 1994, pp. 8 - 10; 陳癸鎭, 「刑法總論」, 大旺社, 1996, p. 671; Hans Heinrich Jeschek, a. a. O., S. 700.

24) 李在祥, 前掲論文, p. 117.

25) 辛義基, 前掲論文, p. 110.

1년에 벌금 200만원(제269조 1항 自己落胎罪, 제311조 侮辱罪 등), 벌금 300만원(제221조 消印抹消罪, 제236조 私文書의 不正行使罪, 제360조 占有離脫物橫領罪 등), 벌금 500만원(제192조 飲用水의 使用妨害罪, 제205조 阿片등의 所持罪, 제245조 公然淫亂罪 등)의 비율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자유형 3년인 경우에는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유형 3년에 벌금 500만원(제283조 1항 脅迫罪, 제136조 秘密侵害罪 등), 벌금 700만원(제309조 出版物等에 의한 名譽毀損罪, 제366조 財物損壞罪 등), 벌금 1,000만원(제219조 偽造印紙·郵票 등의 取得罪, 제349조 不當利得罪 등), 벌금 1,500만원(제242조 淫行媒介罪), 벌금 2,000만원(제171조 業務上 失火罪, 제247조 賭博開場罪 등)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벌금형은 자유형의 輕重에 상응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형의 대비에 있어서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법상의 벌금형이 자유형을 비롯한 다른 형벌에 비하여 輕하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형법개정에 의하여 벌금액을 인상하였다고 하나 벌금 법정액이 징역형 1년 내지 3년인 경우에 법정액의 상한이 500만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sup>26)</sup> 이 경우 검사의 벌금구형과 법원의 처단형 선고형의 양형과정에서 감액되어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액은 법정형에 훨씬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형법상의 벌금액이 너무 낮다고 하겠다.<sup>27)</sup> 또한 형법상의 벌금형은 특별형법의 벌금형에 비하여도 너무 가벼운 실정이다.<sup>28)</sup> 이는 현행 형법상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 5. 勞役場留置의 問題點

형법 제69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벌금형의 납부를 강제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벌금미납자인 수형자는 일정액의 비율로 산정된 기간 동안 자유형과 동일하게 교도소내에서 자유를 박탈하게 된다(行刑法 제1조).

換刑處分인 勞役場留置를 재산형의 특별한 집행방법이라고 하나 자유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자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제도 자체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시정

26) 우리 형법상 벌금 법정액의 상한이 5백만원인 경우가 46개의 罪에 달하고 있는 반면 3천만원 상한인 경우는 虛偽有價證券의 作成罪(제261조), 虛偽診斷書 등의 作成罪(제233조), 業務上의 橫領과 背任罪(제356조) 등 3개 뿐이다.

27) 李榮崗, 前掲論文, p. 222.

28) 예를 들면 建築法 제8조 1항,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등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하여 사실상 단기자유형과 같은 勞役場留置處分을 하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는 후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69조 1항 단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인 미납자 뿐만 아니라 미납가능성 있는 자까지도 유치할 수 있게 하여 벌금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동항 본문의 취지를 상실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더구나 一時納入制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법에 있어 실제로 勞役場留置를 당하거나 留置命令을 받게 될 자는 대부분 가난한 자일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sup>29)</sup>

또한 유치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최근에는 특히 대규모 경제사고가 빈발하고 다액 經濟事犯이 많아 집에 따라 다액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납할 때도 3년 이하의 기간 勞役場에 留置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만원, 경우에 따라 수십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를 하게 된다. 이 측면에서만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화하는 것이 되어<sup>30)</sup> 범죄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그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IV. 現行 罰金刑制度의 改善方案

### 1. 罰金刑 適用範圍의 擴大

자유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격상 벌금형을 부과하여도 지장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1995년 12월 29일자 개정을 통하여 職權濫用罪(제123조) 등 19개의 범죄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는 죄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잡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신체의 구금으로 인한 자유박탈의 고통에 못지 않게 경제적 자유의 박탈로 인한 고통 또한 커졌기 때문에 벌금형도 자유형 못지 않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날로 다양해지는 범죄의 태양에 합리적으로 대체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와 벌금형의 의의에 비추어 벌금형을 배제하는 처벌법규의

29) 姜東汜, 前掲論文, p. 87; 이병기·신의기, 전계논문, p. 60.

30) 李榮蘭, 前掲論文, p. 230.

영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생활의 불안정화로 재산범, 그 중에서도 困窮犯이 아닌 利慾 내지 貪慾的 犯罪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利慾的 犯罪에 대하여는 단순한 신체자유의 박탈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利慾犯에 대하여는 자유형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까지도 벌금형으로 흡수함으로써 소기의 형벌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벌금형 병과에 관한 일반 규정을 넓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1)</sup>

현행법은 특별법상 단편적으로 벌금형의 병과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법상의 일반 규정으로는 阿片에 관한 罪(제198조 내지 제203조), 通貨偽造罪(제207조 1항·2항·3항),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제214조 1항·2항, 제215조, 제217조, 제218조 1항·2항), 常習贓物取得·讓渡·運搬·保管·斡旋罪(제363조 2항) 뿐이다.<sup>32)</sup> 또한 형법 각칙에 벌금형의 범위를 넓히는 외에 벌금형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는 형법상 3년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33)</sup>

## 2. 罰金の 分納·延納制의 活用

우리 형법과 같이 總額罰金刑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日數罰金刑制度의 경우에도 量定된 벌금액을 일시에 지불하기에는 곤란이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벌금형의 不納이 代替自由刑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短期自由刑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의 납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일시에 벌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벌금의 延納(Zahlungsfrist)과 分納(Ratezahlung) 制度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sup>34)</sup>

31) 朴舜用, 前揭論文, p. 54.

32) 독일에서는 법정형으로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외에 이육법에 대하여 자유형을 과하는 경우에 벌금형이 필요한 경우에 법정형으로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 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도 벌금형을 자유형에 병과할 수 있다(독일형법 제41조)고 규정하여 이육범죄에 대처하고 있다.

33) 辛義基, 前揭論文, p. 110.

34)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로는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97, p. 637; 宋廣燮, 「現行 刑罰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下)」, 「矯正」, 통권 제192호, 1992. 4, p. 47; 이병기·신의기, 전개논문, p. 89; 慎鎮揆, 前揭書, p. 595; 李榮蘭, 前揭論文, p. 229; 鄭榮錫·申洋均, 前揭書, p. 396.

延納은 納入 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며, 分納은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벌금을 장기간에 걸쳐 납입하게 함으로써 납입 불능상태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계속 주게 되어 특별예방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우리 형법은 제69조 1항에 “罰金과 科料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分納 및 延納制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검찰징수사무규칙(법무부령 제233호)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부 납입과 납부 연기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동규칙 제12조). 독일 형법 제42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일신상 또는 경제상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그에게 벌금의 즉시 납부가 기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게 납부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거나 벌금을 일정한 분납액으로 납부할 것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원에 의한 延納 내지 分納의 허가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영국, 스위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및 미국의 몇몇 주 등에서 벌금의 分納 및 延納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도 외국의 예를 참작하여 벌금형 납부에 있어서 延納 및 分納制度를 도입하여 벌금형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도 벌금의 分納 및 延納을 받아야 하는 자는 대개 가난한 자이므로 결국은 지급불능으로 되기 쉽다든가, 형벌로서의 성격을 상실할 염려가 있다든가, 집행기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벌금의 미납에 대하여는 換刑處分이 가능하고 이 제도가 형벌의 개별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집행기관의 부담증가만을 이유로 이 제도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에 따른 벌금의 납부를 해태하는 자에게는 그 특권을 박탈하는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sup>36)</sup>

### 3. 罰金刑의 執行猶豫制度의 導入

우리 형법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宣告猶豫를 인정하면서(동법 제59조) 執行猶豫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면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35) 이병기·신의기, 전제논문, p. 89.

36) 독일 형법 제42조 단서는 “이 때에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분납액의 하나를 적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은 벌금을 일정한 분납액으로 납부하는 특권의 소멸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鄭榮錫·申洋均, 前掲書, pp. 396 - 397.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집행유예의 본래 취지가 자유형 집행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 하지는데 있으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자유형의 경우와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따라서는 벌금형 집행이 가족의 생활에 커다란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의 선고만으로도 경고적 기능을 할 수가 있고<sup>37)</sup> 또한 집행유예제도의 형사정책적 목표를 벌금형에 대하여 부정할 이유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勞役場留置와 같은 단기자유형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형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필요한 것이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sup>38)</sup>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오스트리아(형법 제43조 1항)와 일본(형법 제25조) 등이다.

#### 4. 勞役場留置制度의 改善

벌금형의 납부를 담보 내지 강제하기 위한 勞役場留置의 집행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벌금형이 다시 단기자유형으로 환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벌금형 본래의 형사정책적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따라서 勞役場留置는 벌금형 집행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폐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는 먼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연납 및 분납제도의 도입으로 勞役場에 유치되는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형법 제70조와 관련하여 벌금 미납의 경우 바로 勞役場에 유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내 제재수단의 일종인 社會奉仕命을 부과하여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勞役場留置를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9)</sup> 勞役場에 留置되는 경우에도 그

37) 朴相基,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p. 129.

38) 姜東汎, 前掲論文, p. 92; 金大彙, "刑罰制度의 改善方案", 「司法行政」, 1992. 2, p. 28; 김일수, 「형법총론」, p. 638; 박상기, 전계논문, p. 129; 宋廣燮, 前掲論文, p. 47; 신의기·이병기, 전계논문, p. 89; 李在祥, 前掲書, p. 504; 정영태, "집행유예제도에 관한 소고", 「검찰」 제94호, 1986, p. 201.

39) 金秀吉, "自由刑制度에 관한 研究", 「濟行論叢」,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1996, p. 77.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자유형의 가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勞役場에 留置된 자의 행형실적에 따라 미리 석방시킬 수 있는 제도가 勞役場留置制度에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sup>40)</sup> 일본 형법 제30조는 勞役場에 留置된 자에 대하여 가출옥을 허용하고 있다.<sup>41)</sup>

다음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벌금형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으로 換刑시키는 代替自由刑制度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勞役場留置를 인정하고 있다(형법 제69조 1항). 그러나 벌금이 특히 고액인 경우 그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를 납부하기 보다는 차라리 勞役場에 留置되는 편을 택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가 있다. 따라서 代替自由刑의 집행은 피고인에게 납입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sup>42)</sup> 독일에 있어서는 징수할 수 없는 벌금형에 대하여 이를 대신하여 자유형을 과하는 代替自由刑을 채택하고 있는바, 代替自由刑의 최상한은 2년이고 최저한도는 1개월이다(독일 형법 제43조 a 3항). 이러한 代替自由刑을 日數罰金刑制度和 통합할 때 비로소 범죄인의 不法과 責任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sup>43)</sup>

## 5. 日數罰金刑制度의 導入

日數罰金刑制度(Tagessatzsystem)는 總額罰金制度가 안고 있는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고 정당한 사회적인 벌금형을 형성하기 위하여 나타난 제도이다.<sup>44)</sup> 日數罰金刑制度란 행위자의 不法과 責任에 대한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각 1일의 벌금액을 본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그 합산액으로 벌금총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컨대 행위자의 불법내용과 책임에 대응하여 100일의 일수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선고하고 그의 경제사정

- 
- 40) 姜東汜, 前掲論文, p. 93; 宋廣燮, 前掲論文, p. 48; 이병기·신의기, 전제논문, p. 91.  
 41) 일본 형법 제30조는 “구류에 처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어느 때든지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가출옥을 허할 수 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기 불능함으로 인하여 유치된 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노역장유치의 처분으로 인한 폐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  
 42) 李在祥, 前掲論文, p. 128.  
 43) 李普寧, 「刑事政策」, 第一法規, 1996, p. 425; 鄭榮錫·申洋均, 前掲書, p. 399.  
 44) 일수벌금제도에 관한 소개로서, 姜東汜, 前掲論文, pp. 88 - 91; 권오걸, “罰金刑에 대한 考察”, 「論文集」, 제12집, 慶北實業專門大學, 1993, pp. 85 - 92; 金仁喆, “日數罰金刑制度”, 「立法調査月報」, 國會事務處, 1987. 7, pp. 102 - 106; 朴舜用, 前掲論文, p. 50; 辛義基, 前掲論文, pp. 114 - 130; 吳英根, “刑法改正案의 刑罰制度에 대한 檢討”, 「형사정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여름, pp. 23 - 26; 李在祥, 前掲論文, pp. 120 - 128; 李炯碩, 前掲論文, pp. 5 - 14.

을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10,000원으로 정하였다면 그의 벌금은 1,000,000원으로 양정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먼저 시행하였고 그 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도입·시행하여 큰 성과를 보고 있다.

이 日數罰金刑制度下에서의 벌금형의 양정은 總額罰金刑制度와는 달리 3단계로 나누어서 행해지게 된다.<sup>45)</sup> 제 1단계에서는 법관의 量刑의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자가 행한 불법행위 및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를 따져서 그에게 며칠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인가의 日數(Zahl der Tagessätze)를 결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행위자의 개인적, 경제적 관계에 따라 1일의 벌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日數定額(Höhe eines Tagessatzes)을 결정한다.<sup>46)</sup> 마지막으로 日數와 日數定額을 곱한 벌금액을 수형자가 즉시 납부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일시불로 납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납부완화를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日數罰金刑制度의 기본사상은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 不法과 責任의 요소와 피고인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라는 2개의 요소로 분리하여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벌금형을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게 산정함으로써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른 벌금형 효과의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하는데 있다. 日數罰金刑制度下에서의 벌금의 결정은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책임정도가 같아서 동일한 日數로 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급부능력이 다르면 日數定額은 다르게 산정될 것이므로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sup>47)</sup> 이러한 日數罰金刑制度의 장·단점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장점으로서는 ① 不法과 責任이 동일한 행위는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日數에 의하여 동일하게 처벌받게 됨으로써 벌금형에 있어서도 자유형에서와 같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② 日數定額의 산정은 경제능력을 감안하여 벌금을 과하므로 자유형에 못지 않은 고통을 과할 수 있으므로 단기자유형의 적용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으며, ③ 벌금미납시에 勞役場留置 日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간단 명료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日數罰金刑制度는 범죄의 不法과 責任을 명백히 하면서 日數定額을 범죄자의

45) Hans Heinrich Jeschek, a. a. O., S. 705.

46) 만약 처음부터 금액의 총액을 정하고 이것을 日數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日數罰金刑制度의 취지가 몰각하게 된다고 한다. Schönke · Schröden · Stree, strafgesetzbuch Kommentar, 23, 1988, § 405.

47) George F. Cole · Barry Mahoney · Marlene Thorton · Roger A. Hanson, op. cit., p. 31.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벌금형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up>48)</sup> 양형 과정이 판결이유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므로 법관의 자의를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벌금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① 벌금형의 양형에 있어서 다른 양형의 기초사실에 비하여 경제적 능력의 의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sup>49)</sup> ② 벌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점, ③ 日數罰金刑制度라고 하더라도 刑罰感受性의 개인차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犧牲平等原則의 理想은 실현될 수 없으며 犧牲平等의 原則에 의하면 이러한 벌금액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日數罰金刑制度가 현재의 벌금형제도의 단점을 시정하고 형사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당한 벌금형을 얻게하는 제도임이 명백한 이상 日數罰金刑制度에 대한 비판은 동 제도의 기능을 해할 정도가 아닌 매우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50)</sup>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日數罰金刑制度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 결과,<sup>51)</sup> 피고인의 재산상태, 지불능력 등을 조사하여 일수벌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sup>52)</sup> 그러나 벌금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현실과 처우의 개별화·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의 도입·실시가 단순한 모험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재산범죄와 자력이 있는 자의 經濟犯罪, 賂物

48) Maurach · Gössel · Zipf, Strafrecht, Allgemeiner Teil, Tb, 2, 6. Aufl. 1987, S. 379.

49) 鄭榮錫·申洋均, 前掲書, p. 395.

50) 日數罰金刑制度의 도입을 주장하는 분으로는 권오걸, 전계논문, p. 94; 金洪春, 「刑法改正試論」, 三英社, 1984, p. 396; 金大秉, 前掲論文, p. 30; 金日秀, 「刑法改正과 刑事制裁制度의 改善方案」, 「刑事政策」, 제5호, 韓國刑事政策學會, 1990, p. 19; 裴鍾大, 前掲書, p. 669; 宋廣燮, 前掲論文, p. 46; 吳英根, 前掲論文, p. 25; 李普寧, 前掲書, p. 424; 李在祥, 前掲論文, p. 112; 李炯碩, 前掲論文, p. 13; 鄭圭萬, 「立法上 罰金刑制度에 관한 考察」, 「立法調査月報」, 통권 제19호, 國會事務處, 1990. 9, p. 89; 鄭鳳輝, 「日數罰金刑制度의 比較考察」, 「刑事法研究」, 제4호, 韓國刑事法學會, 1991, p. 212; 鄭榮錫·申洋均, 前掲書, p. 396; 陳癸鎭, 前掲書, p. 671.

51) 형사법개정특별심의 소위원회, 「형법개정요강심의자료」, 제 1·2·3 분과위원회 보고서, 1986. 6, p. 31참조.

52) 姜東汜 및 辛義基 교수도 우리나라는 현재 日數罰金刑制度를 시행하는 국가와는 달리 罰金刑算定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드러나지 않은 현실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봉급생활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 새로운 불공정한 형벌제도를 만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상조라고 한다. 姜東汜, 前掲論文, p. 90; 辛義基, 前掲論文, p. 126.

罪의 영역에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실시하면서<sup>53)</sup> 그 성과를 본 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 V. 結 論

罰金刑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受刑者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재산을 박탈함으로써 制裁를 과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刑事制裁體系에서 시의적절하고 적합한 형벌로 평가되면서 특히 단기자유형의 代替手段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벌로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벌금형은 범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이 예정되어 있는 결과 범죄자의 빈부의 차를 고려함이 없이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결정되므로 범죄자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가 다르며, 벌금형의 집행이 직접 피고인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형벌의 一身專屬的 성질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재산이 많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一般豫防이나 特別豫防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자유형화를 초래하는 勞役場留置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날로 다양해지는 범죄의 태양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상·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罰金刑을 배제하는 처벌법규의 영역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유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성격상 벌금형을 부과하여도 지장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거나 또는 선택형으로서 벌금형 규정을 두어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벌금형의 不納이 代替自由刑으로 전환함에 따라 나타나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벌금의 延納·分納制度和 벌금형의 執行猶豫制度를 立法化하여야 한다.

셋째, 勞役場留置에 따른 폐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벌금

53) 金日秀, 前掲論文, p. 19.

형에 있어서도 자유형의 가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勞役場에 留置된 자의 行刑實績에 따라 미리 석방시키는 제도를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社會內 制裁手段의 社會奉仕命令을 통하여 勞役場留置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日數罰金刑制度의 도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벌금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형벌의 개별화라고 하는 형사정책적인 기본입장에서 볼 때, 日數罰金刑制度의 도입·실시를 본질적으로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와같은 제도의 개선은 벌금형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사회의 변화와 범죄의 증가 및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있어야 할 것이다.